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1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한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까지를 포괄함(안 제2조, 현행 제3조)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청년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6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일자리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인 창조기업이란”을 “용어의 뜻은”으로,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창조기업의”를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발굴 및 포상,”을 “발굴, 포상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개의회고”를 “개의회(開議)하고”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1인 창조기업이란</u>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용어의 뜻은-----
				-----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으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 ① (생 략)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1인 <u>창조기업의</u>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 <u>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u> -----		

4. (생 략) 제6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u>발굴 및 포상, 홍보</u> 6. (생 략) <u><신 설></u> 제13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제15조(예산지원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u>	--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등)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발굴, 포상 및</u> --- 6. (현행과 같음) ② <u>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u>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개의(開議)하고</u>-----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제외한다.</u>
--	--

니하다.